

심 의 의 결 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」 제3조에 의거 “2018년 동작구 안전관리계획(안)”을 다음과 같이 심의함.

□ 심의안건

- 2018년 동작구 안전관리계획(안)

□ 심의결과

- 원안대로 가결 ()
- 원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·보완하여 가결함 ()
 - 수정·보완내용

계획(안)	변경(안)	변경사유

※ 위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2. 22.

소 속 : 동작소방서

성 명 : 박관호